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 명확화(현행 제21조 제2항 삭제)
 -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 평가 대상자에게 선제적·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20. ~ 5. 3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5항) 전단 중 “제3항 및 제4항”을 “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) ① (생략)	제21조(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	<삭 제>
③·④ (생략)	②·③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,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	④ 제2항 및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<u>제5항</u>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04